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4일, 용혜인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5일(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4.11.27.) 상정, 축조심사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1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2.1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09.)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16.) 상정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22.) 상정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29.) 상정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19.)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공청회 개최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용혜인의원)

현대 사회는 기후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임금 저성장, 고용 불안,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수용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저성장,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

국제기구는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 투입, 공공조달 인센티브 제공, 금융 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장

등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권고함. 실제 해외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사회연대경제 또는 협동조합 관련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목적과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는 상충하는 내용도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함.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고 통합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없는 점도 법률 제정 필요성의 배경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법인,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제정안 등 9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이념과 결부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관한 개별부처의 관리·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부 의존을 심화시켜 자생력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됨.
- 사회연대경제는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 부합하고, 불평등·양극화 등

시장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소외된 계층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